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

발의연월일 : 2020. 4. .

발 의 자 :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내방객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공중화장실 등”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라.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실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불법촬영 실태조사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한 관리 위탁 및 불법촬영 예방교육과 홍보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4월 6일 ~ 4월 13일(7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붙임(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

10. 관련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또는 성범죄 신고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

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참고사항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

자 치 단체명	구분	조례(규칙) 명	관련부서	제·개정일자
경기	조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여성정책과	2019-08-06
과천시	조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사회복지과	2019-07-05
남양주시	조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여성아동과	2018-12-27
부천시	조례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여성정책과	2019-12-23
수원시	조례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자원순환과	2019-01-10
파주시	조례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여성가족과	2019-05-10
평택시	조례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여성가족과	2019-07-26
화성시	조례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하수과	2018-12-31